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90

발의연월일: 2021. 12. 24.

발 의 자:신영대·김영배·전재수

정태호 · 송기헌 · 신정훈

홍정민 · 이형석 · 박찬대

송재호·서삼석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전체 가구 중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또한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반려동물 사료 등 반려동물 식품에서 안전 기준 및 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반려동물 식품의 안전성·위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사료는 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 및 동물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위해 발생 시에는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 또는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나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사료의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제24조 및 제26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료검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료의 안전 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료검사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료검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3조의2(사료검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
	<u>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u>
	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재검사 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
	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를 공
	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
	<u>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u>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
	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
	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
	하려는 경우로서 제21조제1항
	에 따른 사료검사가 필요한 경
	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u>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u>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 저 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 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 당 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 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 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u>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베24조(폐기 등의 조치) <u>①</u>
<u>이 경우 해당 사</u>
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제26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 제26조(과징금처분) ① ----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 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 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 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②·③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방 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천만원-----